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호사 배치기준〉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5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3.

(3) 회 부 일 : 2025. 7.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간호사 배치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 배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간호사 배치기준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3항에 따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이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29조는 국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시행규칙¹⁾에서는 그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국가의 정책 대상에 해당함.

1)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개정안은 현행법 제29조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어 체계적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각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²⁾이 접수되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두어야 하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의료기관의 내부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였음.³⁾

□ 한편, 「의료법」 제36조제5호⁴⁾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인

-
- 2) 청원인 : 박시영 (국민동의 수 5만명), 동 청원은 22년 5월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22년 5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청원 취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원심사소위에서 1차례 더 논의되었으며, 임기만료폐기됨.
- 3) 개별 의료기관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및 “재직 중인 간호사 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각각의 정보를 확정하는 시점도 불명확해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조차도 직접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여 파악하기 전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4)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⁵⁾ 및 [별표 5]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정원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자료) >

구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참고 예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외래환자 90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 정원 : 입원환자 $[40 \div 2.5]$ + 외래환자 $[(90 \div 12) \div 2.5] = 19$ 명

- 참고로 현행법령상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 기준은 1973년 「의료법」 전부개정⁶⁾을 통해 도입되면서 정해진 이후 52년간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6) 「의료법」 [시행 1973. 8. 17.]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규격·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 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 1973. 9. 20., 전부개정] 제24조 (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일 평균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 또는 외래환자 5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2. 조산원은 산부인과를 둔 의료기관에 두되, 그 정원은 제3호의 간호원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3. 간호원은 1일 평균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 또는 외래환자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30% 이상)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2021년 4월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4
상급종합	-	-	-	-	-
종합병원	66 (21.9)	65 (20.9)	47 (15.0)	42 (13.2)	37 (11.6)
병원	985 (67.2)	1,025 (70.0)	918 (61.7)	836 (55.2)	878 (53.3)
한방병원	156 (50.0)	174 (56.7)	179 (50.9)	244 (59.5)	262 (58.5)
요양병원*	447 (29.2)	362 (23.2)	351 (22.3)	61 (3.9)	12 (0.8)
전체	1,654 (45.3)	1,626 (44.1)	1,495 (39.6)	1,183 (30.6)	1,189 (30.3)

주)요양병원은 환자/간호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비율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준수”로 분석
()안 비율은 해당 종별 전체의료기관 대비 미준수기관 비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선우의원실 재정리

□ 또한, 현재 간호사의 약 73%가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⁷⁾, 대부분 간호사 개인별로 교대하는 교번제 형태로 운영되어 긴급 결원으로 인한 근무조 변경이 잦은 실정임. 수시로 변경되는 근무표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사유 또는 직무 불만족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음.⁸⁾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토록 할

7) '23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8) 병원간호사회 조사(2022) 결과 주요 이직사유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7.3%으로 나타남

경우,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확대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탈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경우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⁹⁾ 개정안은 간호사 배치기준 산정 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00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18,000명의 직무별 업무량을 조사하였는데, 간호사의 경우 1명당 환자수는 일반병동 3교대 기준 낮 근무 8.6명, 저녁근무 10.9명, 밤근무 13.5명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일평균 간호사 1명당 환자수 >

구분	일반병동(3교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중환자실		
	낮	저녁	밤	낮	저녁	밤	낮	저녁	밤
전체	8.6	10.9	13.5	6.0	7.5	9.7	2.1	2.6	2.7
상급종합 종합병원	6.3	7.7	10.3	4.3	4.8	6.0	1.6	1.7	1.9
병원	7.7	9.7	12.1	5.7	7.0	8.6	2.4	3.1	3.2
병원	15.3	20.7	23.6	8.9	12.9	18.0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간호사)’, 2023, 재 편집

9) 제21대국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안, 제2121907호) 제안이유

- 정부는 2023년 4월 25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등급제¹⁰⁾를 개편하는 동시에 정원 기준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간호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대 환자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정원도 환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물론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에 따라서만 정하고 있고 이마저도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외에도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간호사의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간호법」에서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두 개의 법률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10) 병원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뉘,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

-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현행 「간호법 시행규칙」과 같이 정할 경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두 가지 기준을 적용받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제29조제4항을 통해 「간호법」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즉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두 법률에 따른 괴리를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항을 두 법률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의료법」 제36조제5호의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그 기준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안, 2211092)이 계류되어 있음.

□ 둘째, 「간호법」은 2024년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법률로, 2025년 8월 현재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였음. 정부는 현행 제29조에 따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 배치기준 상향,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및 대체간호사 지원 강화, 간호등급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바,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살펴본 후 이를 반영하여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100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18,000명의 직무별 업무량을 조사하였으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량은 의료기관의 업무체계, 진료과목, 업무단위, 인력구성, 분업화, 환자특성, 계절, 날씨 등 내·외적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업무량의 측정과 자료수집 과정 등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업무량을 수량화하여 평가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회성 측정 결과를 통해 배치기준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제21대국회에서 의료인력 법적기준 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0호, 강선우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¹¹⁾ 법률 시행 초기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 흡수로 인해 지방·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으므로 근무환경, 지역별 불균형 등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제382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19) 회의록 참조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는 간호사 확보 수준, 간호사 면허 보유자의 임상 활동률, 지역별·종별 수급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이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매우 비현실적임. 의료기관의 유형(의원,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과 병동 형태(일반병동, 중환자실 등), 진료과목별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현저히 상이하므로 정량화가 어렵고, 형식적인 기준이 실효성 없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의료기관마다 환자군의 성격,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상황이 상이하므로, 충분한 사전 연구 없는 강제적 기준 도입은 대다수 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인구 유출이 심한 농어촌 및 중소병원은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유출에 따라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는 야간, 휴일 등 환자 진료 자체를 회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과중한 업무문제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님. 개정안과 같이 간호사에 대해서만 정량적 배치기준을 명문화할 경우, 의사·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켜 보건의료 인력의 협업체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 의무화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과 과도한 경영정보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낙인과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간호사중앙회장, 간호조무사협회장,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 배치기준이나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3) 대한병원협회 (반대)

- 개정안에는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인력 양성 및 배치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대책 없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하고 있으며, 간호사 배치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의 임의조항에 머무르고 있어 모든 부담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직결되며, 민간 중소의료기관은 추가 재정 투입이 어려워 의료서비스 위축과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방·중소의료기관은 이미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대형의료기관으로의 간호사 집중 현상 심화로 지역 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되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 다른 별도의 간호법 상 인력기준 신설 시 두 가지의 법적 기준 병존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 체계상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대한요양병원협회 (반대)

- 간호사 배치기준은 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현 상황에서 별도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법」과의 체계적 충돌을 일으켜 입법체계상 불필요한 중복이며, 이는 현장의 혼란 및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동감하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법령을 통한 기준 강제가 아닌 수가보상 확대, 간호인력 확충 정책, 지역별 인력 지원 등 정책적 유인을 통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 및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겠다는 전제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나, 여전히 지역별·기관별

간호사 수급 격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제 적용 시 심각한
실효성 저하와 현장 혼란이 우려됨.

-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사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지 않는 경우 간호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행정처분
또는 병상 감축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지방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눌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 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 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눌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됨)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간호사 (치과 의료기 관의 경우에 는 치 과 위생 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 자를 2.5명으로 나 눈 수(이 경우 소 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 일 입원환 자를 5명 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 점은 올 림). 외래 환자 12명 은 입원환 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 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 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 명은 입원환 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 병원 과 같음	종합 병원 과 같음	한방 병원 과 같음
---	--	-------------	-------------	--	---	---------------------	---------------------	---------------------